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75 발의연월일: 2024. 11. 12.

발 의 자:신정훈·박정현·박용갑

정준호 • 이해식 • 채현일

한민수 · 김기표 · 차지호

박 정・임미애・부승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조제2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에서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100분의 45를 제외한 금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규모가 정체되거나 축소 되면서 이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 규모가 정체되거 나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국민들의 소방 및 안전 투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 투자에 필요한 재원 확충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비율을 현행 100분의 45에서 1만분의 7,799로 상향하고자 함.

다만, 소방안전교부세 일정율이 인상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 되는 내국세가 감소하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대상 내국세 총액에서 제외하는 세목 중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로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만분의 1,143으로 개정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를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만분의 1,143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	②
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	
다.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1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	
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	<u>개별소비세</u>
<u>의 45</u>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	
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u><신 설></u>	2.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
	세 총액의 1만분의 1,143
<u>2</u> . (생 략)	<u>3</u> . (현행 제2호와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